C - 95 - 2014

- (10) 계측결과는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저히 큰 변위 및 응력이 발생할 경우는 즉각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.
- (11) 계측결과 분석은 토질 및 기초기술사 등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 되어야 한다.
- (12) 띠장은 언제나 직선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, 띠장의 직선성 관리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. 단, 띠장이 굴착측 또는 배면측으로 단일곡선으로 휘어져 있는 상태는 바람직한 상태이나, 적절한 허용한계 (띠장 길이(L)×0.25%)를 넘어서는 안된다.
- (13) 띠장의 과다변위, 허용긴장력 초과로 인한 띠장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기존 띠장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응급되메우기, 추가 띠장 및 버팀 보설치 등의 대책수립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(14) 띠장의 길이와 변형량을 고려하여 추가 긴장력을 결정한 후 추가 긴장을 하여야 하며, 추가 긴장력을 포함한 총 긴장력은 설계 긴장력의 1.3배를 넘어서는 안된다.
- (15) 띠장이 단일곡선으로 휘어진 경우에는 정착장치에 추가 긴장력을 도입하고, S곡선으로 휘어진 경우에는 편심보의 유압잭을 조정하여 띠장의 직선성을 유지 시킨다. 띠장이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 뒤, 강선의 긴장 여부를 결정한다.

6.7 해체 및 공사완료

- (1) 해체 및 철거는 지반침하와 본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변의 구조물 및 설비 시설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해체 및 철거는 사전에 수립된 해체순서를 준수하며, 구조체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,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순서, 방법, 사용기계, 공정 등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와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(3) 띠장의 해체 및 철거는 설치 작업의 역순으로 진행되는데, 구조물공 또는